

● 제319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78 )

2023. 06.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878

##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3. 05. 30.
- 다. 회부일 : 2023. 06. 01.

###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 가. 세입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조 2,929억 8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8억 1천만원(0.4%)이 증가되었음.

〈표〉 복지정책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5,913,642	6,292,988	6,269,178	23,810 (0.4)
일반회계	4,161,352	4,364,149	4,356,283	7,865 (0.2)
세외수입	경상적	13,511	12,604	- -
	임시적	46,041	71,679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	5	- -
지방교부세	390	145	145	- -
국고보조금 등	4,082,638	4,265,971	4,257,513	8,458 (0.2)
지방채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768	13,743	14,336	△593 (△4.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2,290	1,928,841	1,912,895	15,945 (0.8)
세외수입	경상적	1,050	1,918	751 (155.4)
	임시적	2,855	2,871	2,381 (20.6)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250	376	376 - -
국고보조금 등	868,001	952,678	952,626	52 (0.00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79,134	970,997	956,761	14,235 (1.5)

## 나.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9조 9,717억 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9억 1천8백만원(0.7%)이 증가하였다.

〈표〉 복지정책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9,591,099	9,971,735	9,904,817	66,918(0.7)
행정운영경비	634	621	621	-
재무활동	1,204,931	1,036,493	1,021,330	15,162(1.5)
사업비	885,534	8,934,621	8,882,865	51,756(0.6)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서울시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고 민생경제, 교통요금, 저출생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조 408억원 규모로 이는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가 증가한 것임.
  - 서울시의 금번 1차 추경안은 ① 시민과의 약속이행 (6,750억 원) ② 동행·매력·안전 3대분야 (6,442억 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제출되었음.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총 3조 408억 가운데 복지정책실의 소관 예산은 669억원으로 이는 복지정책실의 기정예산 9조 9,048억 대비 0.7%가 증가한 것임.
  - 복지정책실의 추경 편성사업은 시에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②‘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중점분야 투자강화’에 포함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32억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32억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확대지원(8억원) 등이 이에 해당됨.
- 이 외에도 복지정책실에서는 총 4개 분야, 43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복지 구현 ②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행복지 ③ 복지시설 이용시민 안전 강화 및 복지인프라 확충 ④ 국고보조금 내시 및 의료급여기금 22년도 결산 반영 등으로 구성됨.

## 2 세입 및 세출 총괄

### 가. 세입

#### 1) 세입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조 2,929억 8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8억 1천만원(0.4%)이 증가되었음.

〈표〉 복지정책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5,913,642	6,292,988	6,269,178	23,810 (0.4)	
일반회계	4,161,352	4,364,149	4,356,283	7,865 (0.2)	
세외수입	경상적	13,511	12,604	12,604	- -
	임시적	46,041	71,679	71,679	- -
	지방행정재세 부과금	3	5	5	- -
지방교부세	390	145	145	- -	
국고보조금 등	4,082,638	4,265,971	4,257,513	8,458 (0.2)	
지방채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768	13,743	14,336	△593 (△4.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2,290	1,928,840	1,912,895	15,945 (0.8)	
세외수입	경상적	1,050	1,918	751	1,167 (155.4)
	임시적	2,855	2,871	2,381	490 (20.6)
	지방행정재세 부과금	1,250	376	376	- -
국고보조금 등	868,001	952,678	952,626	52 (0.00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79,134	970,997	956,761	14,235 (1.5)	

- 주된 증액사유는 22년도 결산을 통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증가(142억 3천5백만원)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등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증액(84억 5천 8백만원)에 있음.

## 나. 세출

### 1) 세출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9조 9,717억 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9억 1천8백만원(0.7%)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9,591,099	9,971,735	9,904,817	66,918(0.7)
행정운영경비	634	621	621	-
재무활동	1,204,931	1,036,493	1,021,330	15,162(1.5)
사업비	885,534	8,934,621	8,882,865	51,756(0.6)

### 2) 부서별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에서는 7개 과 가운데 안심소득추진과를 제외한 6개 과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추경 편성액 순으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10건 (298억 2백만원), 장애인자립지원과 7건 (127억 2천6백만원), 어르신복지과 13건 (123억 9천만원), 자활지원과 5건 (91억 3천1백만원), 안심돌봄복지과 4건(23억 6천1백만원), 장애인복지정책과 4건(5억 8백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음.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제1회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9,904,817	66,918	9,971,735	0.7	43
복지정책과	4,269,032	29,802	4,298,834	0.7	10
안심소득추진과	1,285	-	1,285	-	-
안심돌봄복지과	311,357	2,361	313,718	0.8	4
어르신복지과	3,722,662	12,390	3,735,051	0.3	13
장애인복지정책과	212,577	508	213,085	0.2	4
장애인자립지원과	1,154,811	12,726	1,167,537	1.1	7
자활지원과	233,093	9,131	242,225	3.9	5

3)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세출예산 추경안은 일반회계 510억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분야별 세부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복지 구현 (8건, 131억 7천6백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동행복지 (16건, 187억 1천2백만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등 복지시설 이용 시민 안전강화 및 복지인프라 확충 (6건, 52억 3천5백만원),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사업 내시 반영 (13건, 297억 9천5백만원) 등으로 구성됨.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9,904,817	66,918	9,971,735	
	복지정책과-10개	4,269,032	29,802	4,298,834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급여	1,104,768	0.3	1,104,769	○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률 변경 (6:4 → 5:5)에 따른 예산 조정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재산장제급여	6,245	0.4	6,246	○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률 변경 (6:4 → 5:5)에 따른 예산 조정
3	보훈단체 지원	3,912	61	3,973	○ 2022년 신규 설립 공법단체 운영비 추가 신규 지원 - (추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공로자회 서울시지부 - (신규) 4.19민주혁명회, 5.18민주화운동유공자유 족회 서울시지부
4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75,855	168	76,023	○ 청년 자립토대지원사업 신규 추진 - 자립토대지원금 150백만원, 자문회의 및 홍보비용 등 18백만원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4,520	3,213	17,732	○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인원 증가하여 급여 부족분 확보
6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9,896	560	30,456	○ 하반기 교통비 인상에 대비하여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금 추가 확보
7	의료급여사업	1,912,783	15,944	1,928,728	○ '22년 의료급여기금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세입예산 변동 세출 및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8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2,981	188	3,169	○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정원 증가(6명)에 따른 인건비 증액
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952,626	52	952,678	○ 의료급여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전출금 확보
10	국고보조금 반환	0	9,617	9,617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안심돌봄복지과-4개		311,357	2,361	313,718	
11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34	51	85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강서구)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
12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688	574	7,263	○ 시설안전 관련 간급 사업 지원 - 스프링클러 설치 등 7개 사업 - 노후시설 개보수 등 13개 사업
13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877	34	911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교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사업 확대 추진 - '22년 8개동→'23년 17개동 (동당 2백만원 지원)
14	국고보조금 반환	0	1,701	1,701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어르신복지과-13개		3,722,662	12,390	3,735,051	
15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291	784	3,075	○ 하반기 소요액 추가 확보 - 냉방비 개소당 115천원, 2개월(7~8월) - 난방비 개소당 370천원, 5개월(1~3, 11~12월) ※ 국:시:구 20:40:40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1,941	△1,372	50,568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23.5월)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조정
17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2,243	17	2,260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자연증가분 16,964천원 반영 ※ 국:시 50:50
18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8,249	1,861	10,110	○ 성북구립노인종합복지관 착공('23.10월) 시기 반영 건립비 증액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9개소 유지보수·안전 관련 기능보강사업비 증액
19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3,915	90	4,005	○ '23.7월 중구시니어클럽 신규 개관에 따른 6개월분 운영비 지원 ※ 시:구 50:50
20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29,761	40	29,801	○ 망우리 시립묘지 개장전수 증가에 따른 개장지원금 추가 확보 - '23년 윤달(3~4월) 포함
21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5,522	82	5,604	○ 은평실버케어센터 신규 개원 지원(1,000백만원) 및 요양시설 3개소 긴급 기능보강(98백만원) ※ 국비 확정내시 반영(감 937백만원)
22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4,229	2,563	6,792	○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비 추가 확보 및 안전시설 보완, 추가공사 등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23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8,279	86	8,365	○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신규 개원('23.11월) 예정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마련
24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73,663	8,825	182,488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의거 자치구 어르신일자리 확대 - 일자리 3,569개 증 (71,041→74,610)
25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숙)	5,162	△634	4,529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의거 시직숙 어르신일자리 감조정 - 일자리 109개 감 (1,329→1,220)
26	학대피해노인전용쉼 터 운영	245	14	259	○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조정수당 부족액(5,328천원) 및 입소 어르신 식자재 구입비 증액(1식당 1,500원 증액, 4천원선)
27	국고보조금 반환	5,917	34	5,951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장애인복지정책과-4개		212,577	508	213,085	
28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	0	156	156	○ 장애인 당사자별 욕구에 기반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검증 - 모델 검증 용역 120백만원, 매뉴얼 제작 등 36백만원
29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90	103	493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4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매칭시비 편성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3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08,836	34	108,870	○ 장애인 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31	국고보조금 반환	3,219	215	3,434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장애인자립지원과-7개		1,154,811	12,726	1,167,537	
32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344	938	1,281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증액분 반영 - 필수인력 인건비 반영
33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23,844	3,800	27,644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른 바우처 지원 인원 확대 - 9,935명 → 11,526명 지원
34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운영	4,152	66	4,218	○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 추가 지원 - 3개 구 실태조사 인건비 지원
3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547,629	3,223	550,852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급여 확대 지원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증액분 반영
36	저소득 장애인 주거현의지원(집수리) 사업	1,451	△128	1,323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37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9,114	1,286	10,400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른 바우처 지원시간 확대 - 월44시간 → 66시간 지원
38	국고보조금 반환	0	3,542	3,542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자활지원과-5개		233,093	9,131	242,225	
39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40,316	8,185	48,501	○ 자산형성 지원사업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탈수급지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매칭 시비 추가 확보 - 지원 대상자 증가
40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727	52	779	○ 노숙인 복지시설 안전 관련 기능보강사업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 노숙인 자활시설 2개소, 노숙인 요양시설 1개소
41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2,831	84	2,915	○ 노숙인 지원주택 19호 추가 공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인건비 (4명) 추가 확보
42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8,663	809	9,472	○ 쪽방주민 동행식당 이용률 증가에 따라 하반기 동행식당 식대 516명분 및 동행식당 전자급식카드 도입 예산 확보 등
43	국고보조금 반환	0	1	1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별설명서 p.591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서울시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서울시민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주요 추진 경과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 '13. 7.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도입 : '13. 8.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12차 개편 : '13. 10.~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60%이하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43%  
→ 45% → 46%
  - 재산기준 : 1억원 ⇒ 1억 5천 5백만원
  - 금용기준 : 5백만원 ⇒ 3천 6백만원
- 급여 지원 방식 변경 : '16. 1.
  -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 만75세 이상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 8. 1.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1. 5. 1.

○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지원대상 : 4,782가구 6,170명('22. 12월말 기준)
- 지원내용 :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원) · 장제급여(80만원)
-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주거급여 선정기준)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5천 5백만원 이하
    -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1억원)·고재산(9억원) 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집행기관에서는 동 제도의 23년 본 예산을 전년도 실집행액과 기준중위 소득 인상율을 반영한 14,52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선정기준 완화 등의 요인으로 4월 말 기준 집행률이 40.7%로 높게 나타나면서 하반기 중 예산 소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액편성(증 32억 1천3백만원)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23년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7,732,249	14,519,744	3,212,505

〈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연도	최종예산 (A)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B)	불용률 (B/A)
2020	19,934,540	△400,000	19,534,540	11,323,439	8,211,101	41.2%
2021	16,326,080	△367,000	15,959,080	13,619,973	2,339,107	14.3%
2022	15,781,772	0	15,781,772	14,888,449	893,323	5.7%

- 동 제도는 서울시민의 빈곤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실현을 위해 13년 제도 도입 후부터 지속적으로 선정기준 완화를 추진해 왔음.
- 금년 1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기준을 준용해 기준 중위 소득을 46%에서 47%로 상향하였으며, 4월부터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내용

개선사항	주요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30%→40% 상향조정
재산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한하여 가구당 최대 9,900만원까지 공제 -공제 후 기준 재산기준 155백만원 초과 시 책정불가, 최대 재산기준 254백만원
금융재산 특례	유자녀 가구에 대해 금융재산 특별공제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가구에 한하여 자녀 1인당 금융재산 1천만원 씩 공제 공제 후 기준 금융재산 기준 36백만원 초과 시 책정불가



- 최근 3년간 서울형 기초보장수급 대상자는 21년 6,737명, 22년 6,170명, 23년 4월 기준 6,015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4월부터 실시된 선정기준 완화로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
- 동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탈락자를 대상으로 제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그러나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체적인 완화조치로 국가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대응 중심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가는 측면이 있었음.<sup>1)</sup>
- 집행기관에서는 동 제도를 통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개선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도 그러한 의미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사업 운용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그 시기와 규모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임.
-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내용<sup>2)</sup> 등을 반영한 동 제도의 장기 운영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촘촘한 사업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1) 문혜진, 이종선(2022). 서울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1~2023)

나.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614>

-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6천8백만원을 증액한 760억 2천3백만원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음.
- 추경 사유는 시의성 있는 시책사업 추진의 자원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으로, 추경 편성을 통해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신설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표>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76,022,567	(x-) 75,854,567	(x-) 168,000
출연금	(x-) 76,022,567	(x-) 75,854,567	(x-) 16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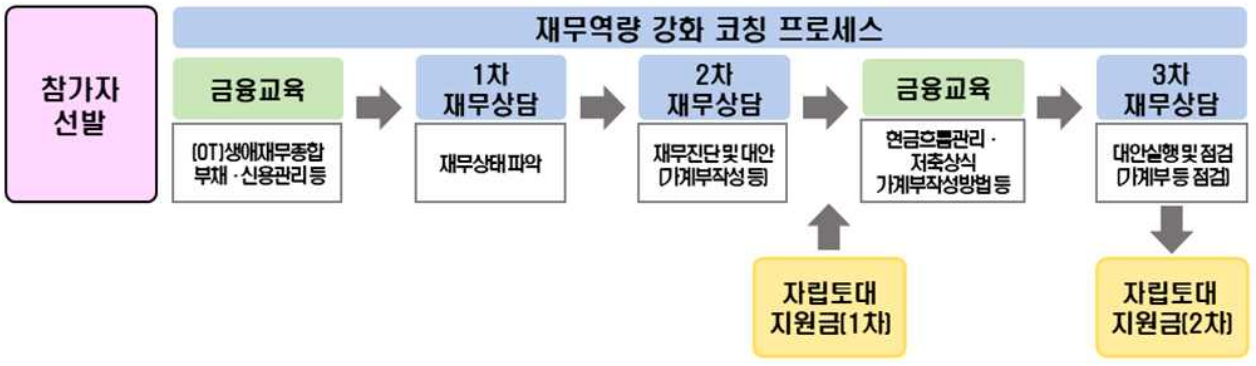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개인회생 면책예정 및 면책완료 청년들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총150명에게 지원하고자 1억5천만원, 운영비 등이 포함된 1억6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 및 재무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에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사업개요

- 대 상 : 개인회생 면책예정(3개월) 및 면책완료(6개월이내) 청년 150명
  - 서울시 거주 만19세~만39세 근로중인 기준중위소득 140%이내 청년
- 내 용 : 개인회생 청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금 지급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지급(50만원 × 2회)
- 추진체계 및 역할

서울시	서울회생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수립</li> <li>• 사업예산 확보</li> <li>• 참가자 모집공고</li> <li>• 관계기관 연계 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책대상자 사업홍보</li> <li>• 사업신청자 면책결정일, 미납 및 잔여변제 회차 회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자 건보료 기준 소득수준 확인, -기준중위소득 1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 관리총괄</li> <li>• 재무코칭 및 금융교육</li> <li>• 토대지원금 지급</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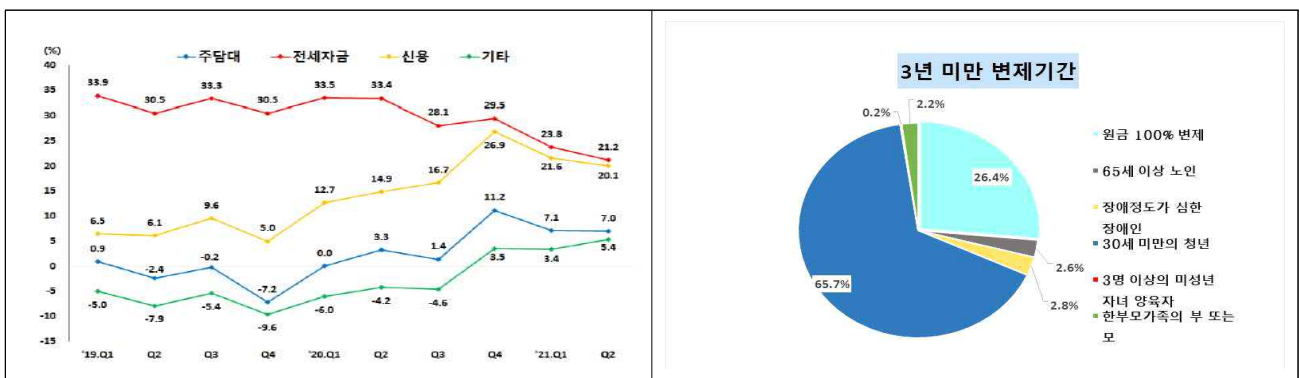
○ 절 차



-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청년층의 부채 과다로 매년 개인회생 개시결정자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마련 및 자립토대 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 2022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 개인회생신청 현황은 “30세 미만 청년”

신청 추이는 10.7%(2020년)→14.1%(2021년)→15.2%(2022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30세 미만 청년'의 가상화폐, 주식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와 '30세 미만 청년'의 변제기간을 3년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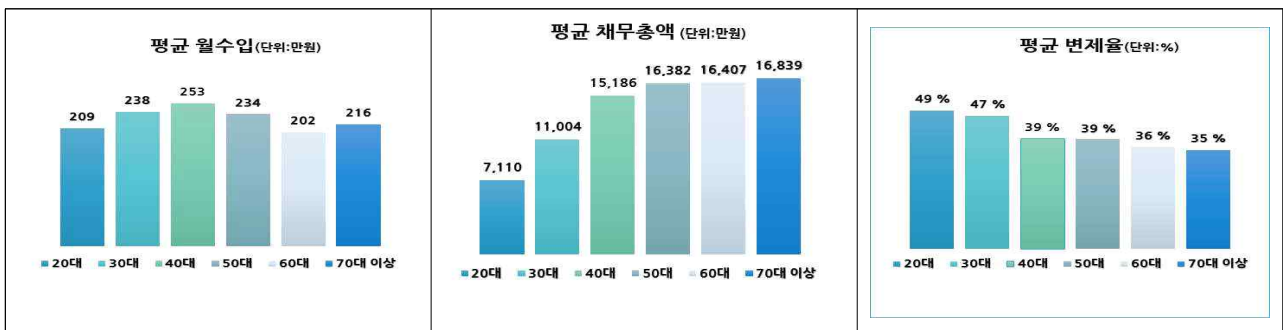
〈표〉 청년층 가계부채 종류별 증가율 및 변제기간



자료 : 한국은행(가계부채 DB)

- 또한 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평균 총 채무액이 가장 낮고 (7,110만원), 변제율은 가장 높게(평균 49%)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표〉 연령별 평균 월수입, 평균 채무총액, 평균 변제율



출처 : 서울희생법원, 2022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관련 정책으로는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영테크 사업과 복지재단에서 추진중인 '청년재무길잡이 사업'<sup>3)</sup>등이 있으며, 각 사업별 대상과 지원기준은 상이하나 유사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구분	청년수당	청년통장	서울영테크
대상	만34세 미취업 청년	만34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만39세 이하 청년
소득 요건	중위소득 50%초과~150%이하	· 본인: 중위소득 140% 이하 (255만원 이하) · 부양가족: 소득1억원, 재산 9억원 미만	-
지원 (제외) 기준	(제외) ·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 로자(취업자) · 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 여중인 자	(제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 급자 · 5천만원 이상 부채보유 · 본인 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통일부, 보건복지 부, 서울시, 타 지자체 유사 자 산형성사업 기준 및 신규 참여 자 · 청년수당 참가 중인 자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월50만원, 최대6개월 수당지급 · 맞춤형 코칭 및 사후 관리 (서울시지원연계)	· 본인저축액에 대한 1:1 매칭지 원	· 청년의 체계적 자산 형성지원 · 시의성 있는 재테크 교육 및 상담

- 집행기관에서는 산하 재단을 활용해 시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서울시 및 복지재단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길라잡이 사업 등 유사한 사업

3) 「청년재무길잡이」사업은 금융위기 청년의 성공적 재기와 재도산 방지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하면 법원은 변제기간 단축을(최대3년 →2년, 5개 결격사유 제외)검토하여 인가하는 사업임.

들이 기 추진중에 있어, 신규사업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 반면,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에서 많은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이 어려워 채무조정제도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1인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sup>4)</sup>.
- 금융취약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재기지원을 위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가적인 현금지원이라는 방법이 사회적인 평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

4) 부산광역시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이란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에서 많은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이 어려워 채무조정제도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만19세~34세 부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채무조정 비용지원 또는 과도한 월 부채 상환금 등으로 연체위기에 있는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인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다.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사업별설명서 p.628>

- 해당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위기발굴 및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다양한 지역 자원과의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종교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증액편성(3천4백만원)을 실시한 것임.

<표>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사업 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910,809	876,809	34,000

- 해당 사업 예산은 '23년도 본예산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2년 8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사업을 통해 5천만원을 편성하여, '22년 9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었음.
- 집행기관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범사업을 통해 8개 자치구에서 시행된 해당 사업을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취지로 제출되었음.
-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종교단체는 일정부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 내에서 종교단체와의 협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전년도 해당예산 집행 과정 등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나타남.

- 집행기관에서는 '22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2년 9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종교협의회 공모사업'을 수립해 9월부터 12월까지 해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사업 대상 수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집행기관에서는 50개 동을 대상으로 종교협의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8개 동에서만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해당사업에 5천만원으로 편성한 예산을 200만원씩 8개동에 교부하여 1천6백만원(전체 예산의 32%)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사업의 경우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을 포함해 예산집행 과정 등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다소 지적될 수 있음.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12월 해당 사업 예산을 통해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종교협의회 추진계획<sup>5)</sup>'으로 별도 방침을 수립해 24개 자치구에 2천5백만원을 일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사업은 '22년도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실태조사를 위한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대상가구가 많은 동을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사업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은 아니었는지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현재 결과보고서를 수합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고, 자치구로 교부되었기에 사업내용과 집행처에 대한 철저한

5) 안심돌봄복지과-5866(22.12.2.).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종교협의회 추진 계획



관리·감독이 시행되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종교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을 활성화 시키려는 본 사업의 의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기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미 종교인이 참여 가능하며, 실제 서울시 내 동지원사회 협의체 위원 9,339명 중 종교인이 342명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1.12월말 기준)
- 또한, 사업 결과에 나타난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캠페인 개최, 이웃대상 반찬·물품 지원 등 기존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시하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24년 본예산 편성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 <사업별설명서 p.690>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의 개인별 욕구평가에 기반하여 예산을 설계 및 할당, 집행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 이용량, 이용처, 제공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임. 금번 추경안으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모델검증을 위하여 전액시비로 1억 5천6백만원이 편성됨.

<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 명세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156,000	(x-) 0	(x-) 156,000	
사무관리비	(x-)	(x-)	(x-)	◦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청회 운영: 6,000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156,000	0	15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델 검증 용역:12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66,000천원 (3,500천원*1인+2,500천원*3인)*6개월</li> <li>- 운영비 19,000천원</li> <li>- 중개기관 운영비 24,000천원 (4,000천원*6개월)</li> <li>- 부가세 등 11,000천원</li> </ul> </li> <li>◦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운영비 : 3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예산제 매뉴얼 제작 10,000천원</li> <li>- 교육 운영비 16,000천원 (2,000천원*8회)</li> <li>- 사업홍보 등 4,000천원</li> </ul> </li> </ul>

- 추경안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모델 검증을 위해 23년 7월~12월까지 6개월간 서울시 거주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만18세 이상 65세 미만)에게 모의적용을 통해 사업모델을 보완·검증 후 향후 2년간 진행될 시범사업('24년 1차, '25년 2차) 및 본 사업('26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추경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①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청회(600만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델 검증 용역 인건비(6천6백만원), 운영비(1천9백만원), 중개기관 운영비 및 부가세 (3천5백만원),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운영비 (3천만원)임.
  - 추진계획<sup>6)</sup>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 적용은 개인예산을 지급하기 전 단계까지의 모의실행을 운영하여 서울형 모델(안)이 실제

6)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 장애인복지정책과-9077(2023.6.8.)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사업모델을 정교화하고자 하기 위함.

- 이를 위해 서울시 거주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거주형태, 소득,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모의적용 대상자를 100명 이내 규모로 진행 하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에 대한 모의실행을 진행하 고자 하는 내용임.

〈표〉 서울형 개인예산제 운영절차 (※모의적용 운영범위 : □)



- 한편, 보건복지부는 '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장애인 개인예 산제 모의적용 연구에 참여할 4개 자치구 총120명을 대상으로 2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며 서울 마포구, 충남 예산군, 세종특별자치 시, 경기 김포시를 선정하였으며 마포구, 예산군에는 급여유연화 모 델7), 세종특별자치시, 김포시에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8)이 모의적용 될 예정임.

7) 급여유연화 모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 공공과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

8)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일부(2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하며 이용자가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특수자격자를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관리함. 특수자격자는 간호(조무)사, 언어,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등 특수자격보유한 활동지 원사를 말함.

〈표〉 서울형과 국가형 개인예산제 모델 비교

구 분	서 울 시(서울형)	보건복지부(국가형)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지체·뇌병변 장애인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권이 있는 장애인 ( 65세 미만)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도입)
사업규모	▶('23) 모의적용 : 100명 이내 ▶('24) 총40명	▶('23) 모의적용 연구 : 4개 지자체 (시군구), 총 120명 ▶('24) 1차 시범사업 : 8개 지자체
급여수준	▶(상한) 활동지원 급여 중 최대 50% 이내 면서 월 최대 100만원	▶ 1안 : 활동지원 급여 중 최대 10% 내 ('23년 기준 최대 74.7만원) ▶ 2안 : 활동지원 급여 중 최대 20% 내
이용범위	1. 일상생활 지원, 2 사회생활 지원 3. 경제활동 지원, 4. 건강 및 안전지원 5. 교육지원(자기계발), 6. 주거환경 개선	▶(1안)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공공·민간서비스 ▶(2안)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특수자격자* 선택·이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예산제 운영 모형 수립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인예산제와 관련하여 공공 재원으로 개인예산제가 추진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공공 영역에서 이용자 맞춤형의 유연한 급여 제도가 시도되거나 민간 재원의 기획사업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급여제도'가 운영된 바는 있음.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별유연화 서포트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장애인 자립생활모델 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개별유연화 서포트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였음. 개별유연화 서포트 서비스는 사람중심지원이념에 입각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로, 개인별 욕구 사정과 예산 할당, 자기주도적 계획 수립, 원활한 집행과 정산을 위한 지원 등 개인예산제의 기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여 급여사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사업이라 하겠음.

- 경기도 부천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행복디자인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에 복귀한 사람이 주요 대상이라 하겠음. 해당 사업에서는 주거,요양,돌봄,서비스여가,건강·의료와 다분야 연계 영역에서 28가지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중 ‘행복디자인’이라는 명칭으로 대상자 100명에게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지원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디자인은 기존 서비스 메뉴에는 없고 기타 공적 자원이나 민간자원을 통해 지원하기 어려우나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현물과 서비스를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급여라 하겠음.
- 행복디자인사업은 부천시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복지관이 함께 참여하여 시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7년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예산제 원리를 적용한 ‘자기주도지원예산 시범사업’을 준비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무산된 바 있으며, 당시 시범사업 무산의 몇가지 원인 중 하나도 사회서비스 수급권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한 장애계의 반대였음.
-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개인예산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복지부는 2023년 모의적용을 거쳐 2024~2025년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복지부의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서울시

자체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계획중에 있음.<sup>9)</sup>

-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현물의 방식으로 공급되어오던 사회서비스를 현금급여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다만,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당사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마.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726>**

- 해당 사업은 쪽방촌 주민에 대한 주민생활 및 편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쪽방상담소(5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운영 등 쪽방촌 지원 종합대책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내용 가운데 동행식당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지원인원 확대와 동행식당 전자식권 사업추진, 쪽방거주민 실태조사 전수조사 추진 등을 위해 증액편성(8억 9백만원)을 실시한 것임.

<표>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9,472,214	8,663,014	809,200

9)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과제」,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 이한나, 2023.3.

〈표〉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 세부 편성내역

소 계		809,200천원
사무관리비	동행식당 전자식권 사업 시스템 사용료 등	20,000천원
	동행식당 실태조사 40,000원*50개소	2,000천원
	동행목욕탕 현판제작 등 300,000원*10개소	3,000천원
	쪽방주민 실태조사(전수조사)	25,000천원
	민간위탁금	759,200천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운영 8,000원*516명*184일(7~12월)	

- 동행식당 사업은 '22년 7월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방안<sup>10)</sup> 중 하나로, 쪽방촌 주변 주민들이 식권을 내고 식사할 수 있는 '동행식당'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임.
  - 동행식당은 관할 쪽방상담소와 식당 간 협약을 통해 지정되며, 주민이 식권을 내고 식사하면 월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22년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증 32억 5천6백만원)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서울시에는 현재 총 5개(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의 쪽방 밀집지역이 있으며, 약 2,4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0) ①쪽방촌 주변 '동행식당' 지정·운영 ② 노숙인 시설 공공급식 횟수 확대 및 급식단가 인상 ③ 에어컨 설치 등 폭염대비 쪽방주민 생활환경 개선

〈표〉 서울시 쪽방촌 현황

(’22.12.31 기준)

밀집지역	쪽방건물수(동)	쪽방수(개)	쪽방거주자(명)			기초생활수급자(명)	65세이상 홀몸노인(명)	장애인(명)
			계	남	여			
5대 쪽방촌	271	3,389	2,400	2,076	324	1,442	960	283
돈의동	84	730	502	463	39	295	211	76
창신동	32	247	191	171	20	178	87	22
남대문	23	614	407	352	55	245	181	37
서울역	65	1,267	892	789	103	468	309	90
영등포	67	531	408	301	107	256	172	58

- ’23년 1월 현재 총 44개의 동행식당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3년 동행식당 이용자 총 누계수는 210,535명으로, 전체 주민 수 대비 72.2%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3년 동행식당 이용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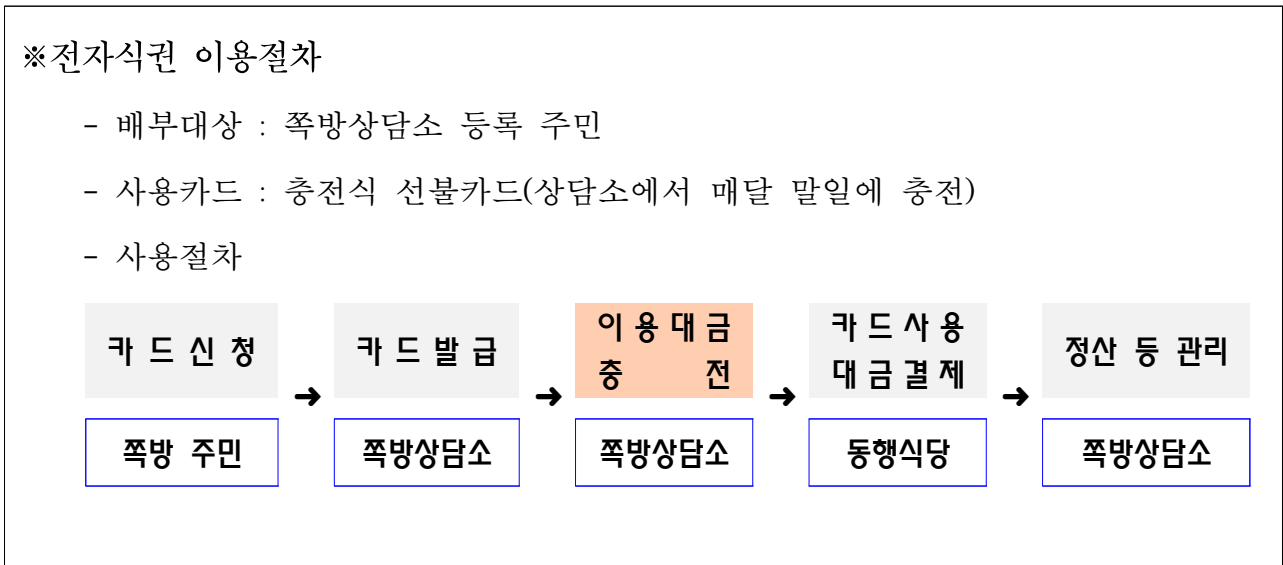
구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총계	이용자 수	210,535	53,755	48,509	54,582	53,689
	월평균 이용자 수	7,017	1,734	1,732	1,761	1,790
이용률	대상자 수	9,713	2,429	2,448	2,422	2,414
	이용률(주민수 대비)	72.2%	71.4%	70.8%	72.7%	74.1%



-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동행식당의 이용률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기관에서 실시한 사업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동행식당 이용경험이 있는 주민의 77%는 동행식당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서울시 쪽방 건물 및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쪽방건물수 301개 동 중에 취사장이 있는 건물은 91개 동으로 전체의 32.2%에 머무르고 있음. 쪽방 거주주민들의 1일 식사횟수는 2회가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쪽방상담소의 서비스도 식품이나 생필품 서비스 지원(49.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동행식당의 이용추세가 늘어나는 점, 쪽방 주민들의 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하반기 동행식당 이용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집행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행식당을 이용하지 않은 쪽방 거주민은 동행식당을 잘 몰라서(15.7%), 식당에서 차별할 것 같아서(14.7%), 쪽방 거주민 신분이 노출될까봐(11.8%), 상담소에 가야 식권 수령 가능(3.9%) 등의 이유로 동행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 쪽방주민이 동행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쪽방상담소에서 월 1회 식권(사용날짜가 표기된 식권)을 배부받아 이를 이용했으나, 해당 방식이 사용자들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다는 점, 이용자 관리가 불편하다는 점 등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전자식권(급식카드)를 도입하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예산은 전자결제시스템을 갖춘 수행업체와 시스템 사용료 등

협약에 드는 비용이며, 해당 비용으로 3년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음.

○ 전자식권(급식카드)를 통한 동행식당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전자식권 방식으로 이용방식을 바꿀 경우, 이용자 편의, 실적 관리 등의 측면에서는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전자식권의 부정사용 등 있어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하겠음.
- 또한, 23년 6월까지 총 10개의 점포가 동행식당에 참여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사유로는 실적저조, 폐업, 이용시간 제한 희망 등이 나타나고 있음. 동행식당 사업은 민간 점포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점포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과 동시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